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 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299
----------	-----

제안일자 : 1997년 7월 4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위원장
민태승의원 외 4인

1. 수 정 이 유

- 학교폭력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등의 용어에 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안제2조)
- 청소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관할 유관기관의 장으로 함.(안제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장으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둠.(안제18조)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 촉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촉등에 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①“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②“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③“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안“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3조)중 “및 지도위원”을 삭제한다.

안“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의원은 관련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타 위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안 제3장의 제목을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한다.

안 “제13조”내지 “제16조”를 “제14조”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제16조 다음에 “제4장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삭제한다.

안“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항중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및 “시와”를 삭제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장으로 하는 5인이내의 자문위원을 둔다.

안“제18조”내지 “제19조”를 “제19조”내지 “제20조”로 한다.

안제19조 다음에 “제5장”을 “제4장”으로 한다.

안“제22조”를 “23조”로, “제21조”를 “제22조”로,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1조중(종전의 제20조) “수당·여비·교육기회제공등”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2조(적용) <u>청소년에 관한 정책·지도·자문을 위한 위원회와 지도위원의 구성·위촉·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u> (신설)	(삭제)
제3조(위원의 결격사유) ----- <u>위원 및 지도위원이 -----.</u> 1.~3. 생략	제2조(정의) ①“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②“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③“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법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 <u>위원이 -----.</u> 1.~3. 원안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u>경찰서장과 교육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제3조(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u>당연직위원은 관련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타 위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원	안	수	정	안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3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제 13조 내지 제 16조 (생 략)		제 14조 내지 제 17조		(현행 제13조 내지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		회 결격사유는 제4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4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삭 제)		
제17조(협의회구성)①-----		제18조(협의회구성)①-----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지도활동과 관련한 -----		
활동과 관련한-----시와읍면동		-----읍면동		
-----		-----		
(신 설)		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 기관장으로 하는 5인이내의		
		자문위원을 둔다.		
② 생 략		③현행 제②항과 같음.		
제 18 조 내지 제 19 조 (생 략)		제 19 조 내지 제 20 조		(현행 제18조 내지 제20조와 같음)
제5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20조(위원회 및 협의회지원)		제21조(위원회 및 협의회지원)		
-----		-----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		
여비, 교육기회제공등 필요한 -----		-----		
제21조(준용) 생 략		제22조(준용)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시행규칙) 생 략		제23조(시행규칙) 현행과 제22조와 같음		